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년 4월 6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8년 4월 12일
- 라. 상정일자 :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백세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자 및 모범·유공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을 마련하여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조항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26조의3)
-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3, 안 별지 제10호서식)

- 조례에 인용된 법령 개정(안 제3조제8호, 안 제5조의2, 안 제 20조, 안 제21조의 3,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
-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에서 위임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조문과 맞게 정비하고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기준 정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 차량 이용자, 백세카드 참여 사업장 대표자, 모범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의 2와 안 제26조의 3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에서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의8,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의3 및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20조의3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설치기준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7조 및 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목을 “여행주차장”에서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또한 안 제27조의 조문을 제20조의2로 정비하였으며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에서는 각각 모범 유공납세자, 전기자동차 이용자, 백세카드 사업 참여업소 대표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항목을 각각 신설 정비한 것으로 이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해 주는 내용을 반영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조례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호행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조문과 불일치한 조례 인용 조문을 일치되게 정비 하였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과 정부 및 구 주차장 시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등의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용자 및 보조금 미 반환 시 강제징수 조항이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3 호
----------	---------

제출연월일 : 2018.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백세카드 사업 참여자 및 모범·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사항과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26조의3)
- 나.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20조의3, 안 별지 제10호서식)
- 다. 조례에 인용된 법령 개정(안 제3조제8호, 안 제5조의2, 안 제20조, 안 제21조의3,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
- 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을 여성우선 주차구획으로 용어 개정(안 제27조)
- 마.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2.14. ~ 3.6.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체를 삭제한다.

제3조제8호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을 “영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0조의2 및 제27조로 한다.

제20조의2(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 주차장”을 “여성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주차장의”를 “여성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9호,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경인로·선유로·노들로·도림로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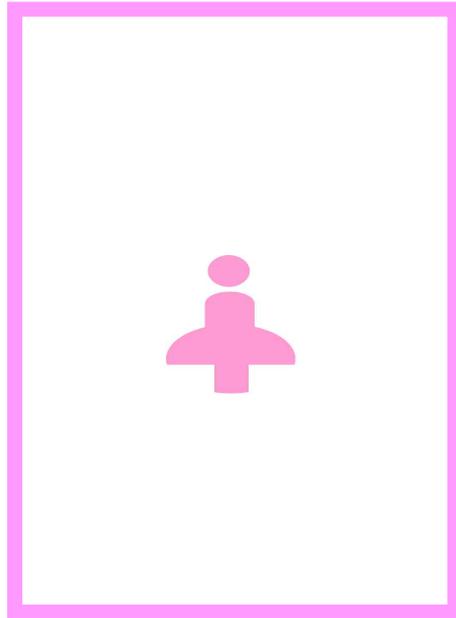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삭제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이를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 및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구청장은 모범·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삭제
1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2.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 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구청장은 주한외교관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인 1회에 한정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16.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100

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 할 수 있다.
18.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삭제
20.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1.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면에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2.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내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에 한한다.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4. 구청장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여성우선 주차구획(제20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 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전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3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u></p> <p>① <u>구청장은 공영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u></p> <p>③ <u>삭제&lt;2007.06.01&gt;</u></p> <p>④ <u>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u></p> <p><u>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u>  <u>: 해제비용 미 징수</u></p>	<p><u>&lt;삭 제&gt;</u></p>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  
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제3조(주차거부금지) (생략)

1. ~ 7. (생략)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  
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  
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  
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1항제  
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  
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  
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제27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주차거부금지)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 「도  
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  
-----  
-----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  
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  
-----  
-----  
-----  
-----.

제20조의2(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여행 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여성우선 -----  
-----  
-----  
-----.

② 여성우선-----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여성우선-----  
-----  
-----  
-----.

제20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 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 현 행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 5. (생략)
- 6.(생략)
- 가. ~ 나 .(생략)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생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라. (생략)
- 8.(생략)
9.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 17. (생략)
18. 구청장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경우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정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 22. (생략)

## 개 정 안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00	20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	10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9,000	8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6,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노상주차장 1일 주차 및 월정기권 발급은 주차면수의 50% 이하로 하며, 5급지 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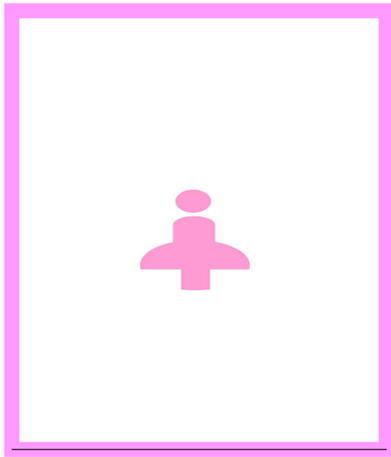
1. ~ 5. (현행과 같음)
- 6.(현행과 같음)
- 가. ~ 나.(현행과 같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라.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모범·유공납세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  
-----
10. ~ 17. (현행과 같음)
18. -----  
-----구에서-----  
-----
19.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7조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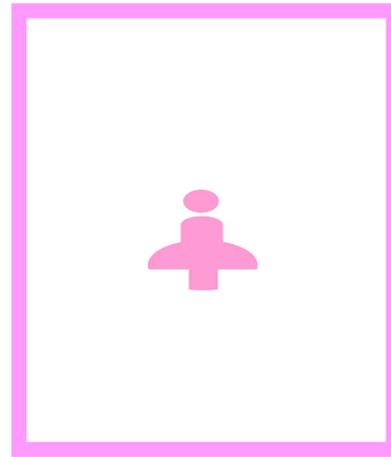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5m 이상×세로 5.1m 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4. 구청장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복지카드(백세카드)사업에 참여중인 으뜸업소의 대표자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여성우선 주차구획(제20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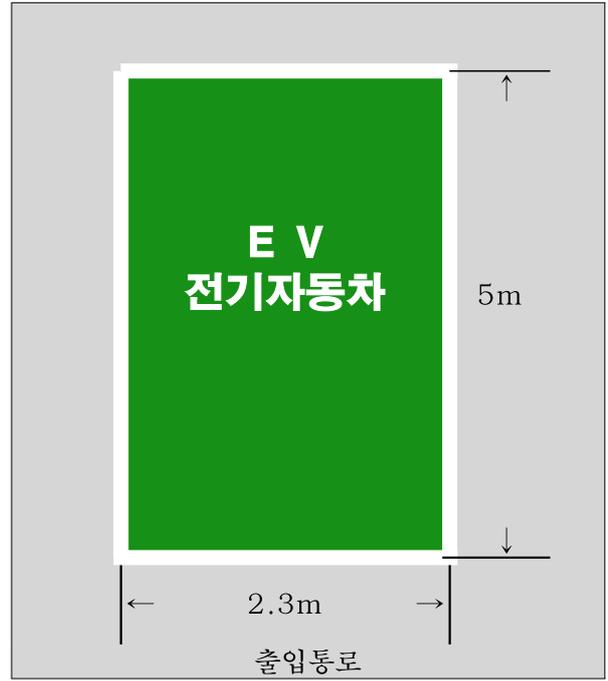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5m 이상×세로 5.1m 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
-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3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